



대 법 원  
제 2 부  
판 결

2013. 2. 15. 원본영수	인
20 . . . . 판결송달	

사 건 2012다108351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  
 원고, 상고인 임그루  
 경북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 
 피고, 피상고인 케이티 노동조합  
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
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  
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재나495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 
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
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



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3. 2. 15.

재판장	대법관	김용덕	<u>김용덕</u>	
주심	대법관	신영철	<u>신영철</u>	
	대법관	김소영	<u>김소영</u>	





# 정본입니다.

2013. 2. 16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성기웅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